

GOVP1199902617

630.951

L293L

1999 v.1

199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8. 11. 12

[관계규정 해설]

총6권중 제1권



농림부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9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9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PC통신(AFFIS)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FFIS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시스템운영과(전화 589-2039)
 - 구입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총 무 과(전화 589-2034, 2036, 2048)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자율사업	13
제3장 공공사업	19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1
제5장 보칙	23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5
1. 배경	27
2. 주요골자	28
3. 주요 변경사항	32
4. 해설	36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965호)	55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48호)	107
V. 참고사항	137
1. 42조원 지원계획	139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141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143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49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151
2. 토양개량사업[자율]	180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증 및 원종생산*(공공)	202
4. 발기반정비(공공)	212
5. 경지정리사업(공공)	232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260
7. 배수개선(공공)	272
8.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95
9.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331
10. 지표수보강개발(공공)	357
11. 농촌생산기반조사 및 생산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공공)	375
① 지하수개발조사 ② 농업용수수질조사·연구 ③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④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412
13. 지역특화사업지원(공공)	427
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②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사업	
14. 서남해안간척(공공)	462
II. 농업기계화	481
15. 농기계구입지원[자율]	483
① 일반농가 ② 벼직파 및 밭작물용 ③ 생산자조직 ④ 쌀전업농	
16.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575
① 농기계보관창고설치 ② 농기계수리봉사지원 ③ 광역농기계수리센터설치	
17. 시설농업기자재생산 및 농업기계생산비축지원(공공)	612
①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② 농업기계생산비축지원	
III. 생산 및 유통개선	627
18.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자율]	629
19. 농업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651
20.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실시(공공)	654
① 규모화촉진직접지불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693
21. 고품질수량증자개발(공공)	695
II. 생산 및 유통개선	705
22.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자율]	707
① 시설원예 ② 노지채소 ③ 특작 ④ 과실	
23. 농산물규격출하 [자율]	800
① 포장자재지원 ② 포장개선시범	
24. 생산자조직육성 [자율]	822
25. 산지유통기반확충	833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및 집하장시설보완 ②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26. 농수산물도매시장및공판장건설(공공)	891
①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및 공판장건설 ② 농산물 도매유통시설 보완	
27.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922
28. 농축산물판매촉진(공공)	933
29. 농산물물류센터(시설)건설(공공)	938
① 물류센터 ② 소비자단체물류시설	
30. 농산물직거래지원(공공)	959
31.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물류센터출하촉진자금(공공)	976
32. 채소수급안정사업(공공)	983
33.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990
34.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건립(공공)	1013
35. 수출농산물저장시설설치(공공)	1019
36. 우수농산물수매 및 유통지원사업(공공)	1026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I. 사육기반확충	1043
37. 축산경쟁력강화사업(차출)	1045
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② 축산분뇨처리시설 ③ 경주마육성사업	
38. 축산단지조성사업(공공)	1107
39. 가축계열화사업(공공)	1120
40. 소산업정보화사업(공공)	1135
41.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공공)	1141
II. 생산 및 유통개선	1151
42.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공판장건설(공공)	1153
43. 축산물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1159
①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② 등급판정	
44. 경영상담·홍보 및 기술개발(공공)	1186
① 경영상담 및 홍보 ② 가축공계 ③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45. 축협조합 경영개선(공공)	1199
46.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사업(공공)	1211
47. 사료제조시설 및 사료원료구입(공공)	1216
48.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공공)	1234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② 축산위생시설자금지원	
49.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258
50. 축산자조금(공공)	1266
III. 가축개량	1271
51. 가축개량사업(공공)	1273
① 한우개량 ② 젖소개량 ③ 돼지개량 ④ 닭개량	
52. 가축개량기반구축(공공)	1311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개선	1319
53.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및 환경농업지구조성 [자율]	1321
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② 환경농업지구조성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④ 환경농업교육사업	
54. 농촌가공산업육성(공공)	1371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특산단지육성 ③ 농산물가공공장 경영·기술지도 ④ 명품개발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457
55. 농림기술개발(공공)	1459
56.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468
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57. 기술보급사업*(공공)	1488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III. 인력육성	1515
58. 농업인후계자육성 [자율]	1517
59. 전업농육성 [자율]	1552
60.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시범사업 [자율]	1597
61.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615
62. 농업계학교등교육지원(공공)	1627
① 농업계특성화대학지원 ②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	
63.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38
IV. 소득원개발	1677
64.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자율]	1679
65. 농공단지육성(공공)	1739
66. 한계농지정비(공공)	1756
67.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1770
① 농업경영자금 ② 축산경영자금	
V. 생활환경개선	1785
68.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1787
① 일반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도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69.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공공)	1867

제6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1891
70. 산림경영장비지원 [자율]	1893
71.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897
72. 임도시설(공공)	1902
73. 영림계획 [자율]	1907
74. 임업기술개발보급(공공)	1912
II. 생산 및 유통개선	1917
75. 임산소득증대 [자율]	1919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경수·분재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76. 임산물이용가공 및 저장시설 [자율]	1944
77. 임업협동조합 및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공공)	1956
① 임업협동조합육성 ②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78.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1967
79. 합판 및 보드류시설지원(공공)	1997
III. 인력육성	2003
80.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육성 [자율]	2005
81.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2011
① 임업전문인력양성 ② 임도시공장비지원	
IV. 환경임업육성	2023
82.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2025
83. 사방사업(공공)	2031
84. 산림생태보전(공공)	2036
85. 산촌종합개발(공공)	2043
V. 산림자원조성	2055
86. 해외조립사업 [자율]	2057
87. 산림조성(공공)	2063



I .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여 백

1. 배경

- 1993년까지의 농정 추진 방식은 『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
- 그동안, 유사사업 통합,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지원실적 공개근거 신설,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함

2. 주요골자

< 기본 방향 >

-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
-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조역량 제고
- 상향식 농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들의 불편사항 해소

가. 농림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 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안내기관은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농업인들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나.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 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업인들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업인들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 농업인들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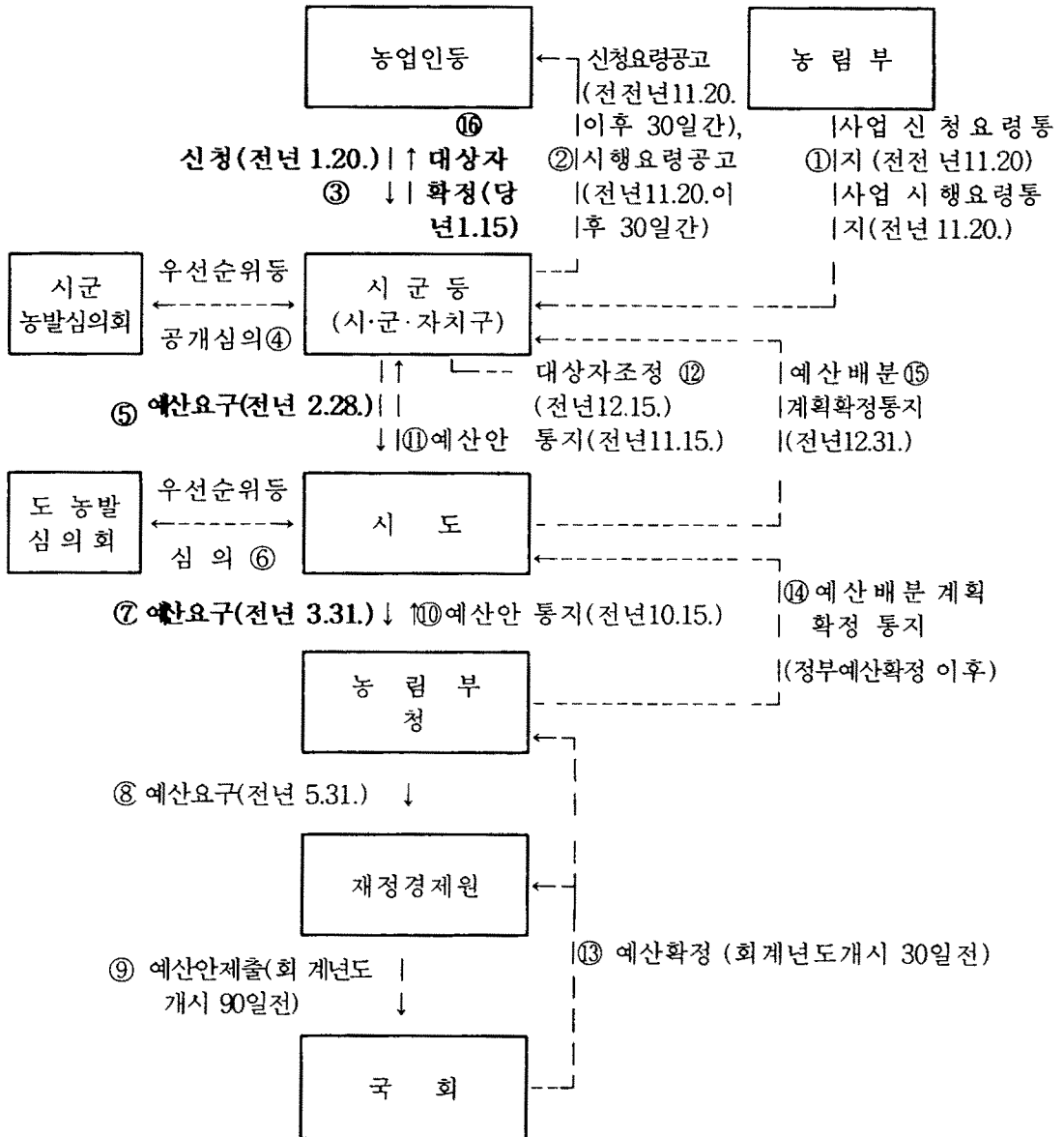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에게도 지원우선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부·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1997년	1998년	1999년
① 유사사업의 통폐합	○ 134개 (자율 40, 공공 94)	○ 99개 (자율 22, 공공 77) (제3조제2항 별표1)	○ 87개(자율 18, 공공 69) (제3조제2항별표1)
②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 의무 이행 강화	○ 사업자에게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성실 기록자와 미기록 또는 기록소홀자에 대한 지원상의 차별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의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고(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신청서 심사시 지원우선 순위에 차별성 부여(제14조제3항) - 미기록 또는 현저히 기록을 소홀히 한자에게는 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선 순위 부여	- 미기록 또는 현저히 기록을 소홀히 한자에게는 순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자구 삭제
③ 경영교육 이수 강화		○ 사업신청서 심사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동일조건에서 미이수자보다 지원우선순위 부여(제14조제4항)	
④ 사업신청에 탄력성 부여	○ 사업시행지침에 세부사업내용을 열거하고 있어 열거된 것 외에 농업인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사업내용이 있어도 일선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소지	○ 정부시책방향을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하고(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내용이더라도 정부시책방향에 어긋나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주도록 사업시행지침에 명시(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신청서 심사시 사업성이 없거나 다른 세부사업내용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서 채택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임	○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심의

사 항	1997년	1998년	1999년
⑤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강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본 규정에 명시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지원요건을 구비하고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법인이 선정 되도록 함(제41조)
⑥사후관리 책임보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부, 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자가 분기별 1회이상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한 후 의견을 기재토록함(제39조제2항)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축·인·삼협 임직원이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하여 기록유지토록 함(제39조제6항)
⑦사업자별 지원실적 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및 농·축·인·삼협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자별로 지원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제40조) 	

4. 해설

제1장 총칙

가. 정의(제2조)

- (1) **농림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제2조제1호)
- (2) **자율사업** : 농업인등,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그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제2조제2호)
 - **농업인등** : 농업인·임업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
 - 생산자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 : 농·축·임·삼협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 : 농림업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농촌과 관련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 (3) **공공사업** :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또는 정부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업인등,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제2조제3호)
- (4) **총괄부서** :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사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 [설명] * 농림부 : 투자심사담당관실
* 청 : 기획예산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 (5) 사업부서 :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5호)

[설명] 농림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재된 『해석기관』이 이에 해당됨

나. 적용범위 등(제3조)

- (1)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함(제3조)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 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설명] * 농업인등과 직접 관계없는 특정업체 또는 단체 등에 특정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농림사업분류표에 포함하여야 하며,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업인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2) 농림사업분류표의 내용(제3조제2항 별표1)

- 대분류(5개)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축산업구조개선,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 중분류(11개)

- 공통(8개) : 생산(사육 또는 경영)기반확충, 농업기계화, 생산및유통개선, 기술개발및정보화, 인력육성, 소득원개발, 생활환경개선, 기타사업
- 특별(3개) : 가축개량, 환경임업육성, 산림자원조성

○ 소분류(단위사업(88개)) : 자율사업 19개, 공공사업 69개

[설명] 정부예산과목의 “세항”(기금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한 그보다 범위를 넓게 설정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3조의2)

- (1) 농림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 30.**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제3조의2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사업시행요령에 열거되지 않은 세부사업내용이라도 정부시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청가능함을 명기함

[설명]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통상적으로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기 전에 사업예정년도에 적용할 농림사업분류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에 통지함(정부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전년도 8. 31.까지)

- (2)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0.**까지 다음의 기관에 통지함(제3조의2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농림사업지침서는 총6권으로 함(제1권은 관계규정 해설, 제2권 내지 제6권은 농림사업분류표상의 5개 대분류를 각권으로 함)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 제5권 : 농촌개발
 - 제6권 :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 통지할 기관

- 농림부의 사업부서, 청, 시도
- 농림사업 안내기관(제8조제1항) : 시군구, 읍면동, 농검 시군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3) 다음사항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기 전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함(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4) 농림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외의 사업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제3조의2제7항)

라. 농림사업심의위원회(제4조 내지 제4조의6)

(1) 구성(19인)(제4조) : 농림부 차관(위원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부위원장), 농림부 차관보·각국장(공보관·감사관·농업통계정보관 포함), 청의 기획관리관, 농·축·임협중앙회의 신용업무외의 업무담당 부회장, 농경연 부원장

(2) 기능(제4조의3)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농림사업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회의(제4조의4) :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함. 다만,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경우는 2, 4, 7, 9월의 마지막주중 각 1회에 한함(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1월내에서 연기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개회 시기
 - 2, 4월은 예산요구 일정 감안
 - 7, 9월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 및 당년도 사업시행여건 변화에 대처
- [설명]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소집을 제한한 것은 신규사업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엄격하게 적용

(4)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제4조의6)

- 구성(16인)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실무위원장),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무부위원장), 농림부의 국장급 및 청의 기획관리관인 위원소속의 주무과장,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제2장 자율사업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7조 및 제8조)

(1)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포함한 사업신청요령 등을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문의 형식은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함)(제7조)

- 공고할 사항(제7조제1항)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농업협동조합등),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함(제7조제2항)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공고내용을 읍면동을 통하여 반(班)까지 문서로 통지함(제7조제3항)

(2) 안내기관 : 시군구, 읍면동, 농검 시군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지개발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제8조제1항)

- 안내기관의 장은 상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내 및 상담에 응함(신청자격 및 절차, 사업계획 작성, 신청자의 기술수준 등, 인·허가 사항,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제8조제2항)

나. 자율사업의 신청절차(제9조 및 제10조)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촌지도소,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음(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및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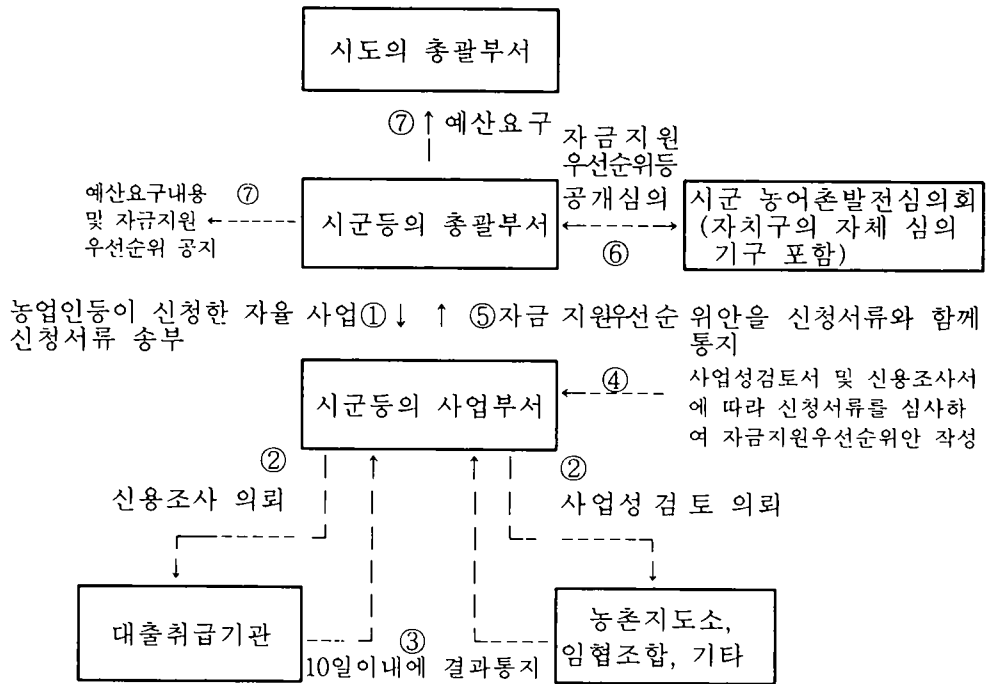
- 농촌지도소장,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이를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해야 함(제9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9조제3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2) 다음금액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9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 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 : 2천만원
- 기타사업 : 3천만원

(3) 신청기한(제10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11조 내지 제16조)



< 업무단계별 설명 >

② 사업성검토(제12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및 제2항)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농촌지도소장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축·삼협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사업성검토 기관)

- 농촌지도소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임협조합 : 임업과 관련된 사업(산림청 소관)
- 기타 : 위 소관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② 신용조사(제13조 별지 제6호서식)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 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④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 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농·축·삼협조합의 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 구성·운영(제14조)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축·임·삼협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위 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제14조제3항)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에서 미이수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14조제4항)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함(제14조제5항)

⑥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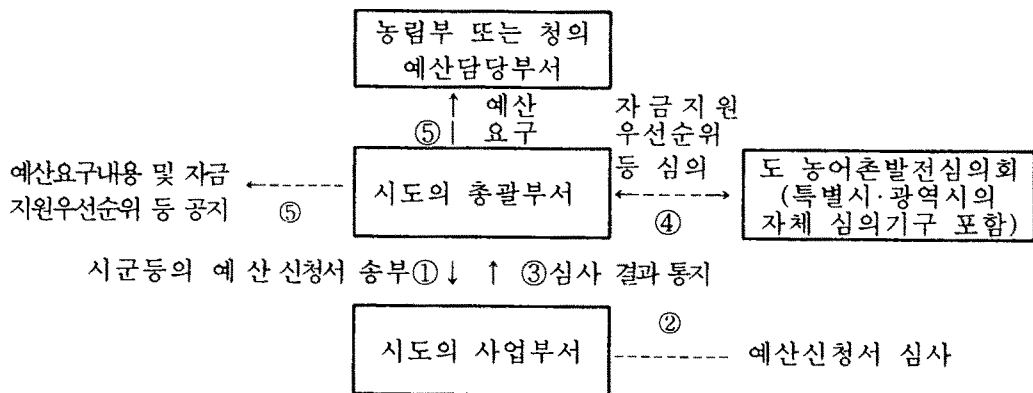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같음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생산자단체장 10인, 농림어업인 대표 14인)**가 참여하도록 유도(미달시는 별도 심의기구 심의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같음)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한 후 나중에 시군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와 함께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직접심의하게 함(제17조제3항)**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등은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 하여야 함(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⑦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16조)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
- 이때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자금지원우선순위 또는 지원예정금액의 변경가능성, 위 사항의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이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17조)



<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도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을 시군 등의 검토예와 같이 추가 검토

마. 농림부 또는 청의 청의 심사(제18조)

- (1)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제18조제1항)
-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제18조제2항)

<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19조)

-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도, 시군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19조제1항)
-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19조제2항)
- (3) 시장군수등은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1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20조 내지 제23조)

-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20조)

[설명] 정부예산 확정기한 : 정부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30일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2일이 법정시한임. 그러나 국회사정에 의하여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1조)
- (3) 시군등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 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22조, 제23조)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 사유>

- 시군 농발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아.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24조)

- (1) 시장군수등은 정부로부터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하여야 함(제24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 (2) 위 금액미만으로서 1천 5백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자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2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제3장 공공사업

가. 공공사업의 신청(제25조)

- (1)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등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 읍자대행기관에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사업부서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당해일)까지 신청(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 용자대행기관 : 농·축·임·삼협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용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제25조제1항)
- 용자대행기관이 직접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같음함(제25조제1항)
- 공공사업 신청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효과의 확산 방안, 사업준비상태, 사업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제25조제2항)

(2)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용자대행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송부함(제25조제3항)

[설명] 사업시행지를 관할하는 시군등과 관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당해 시군등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나. 공공사업의 예산반영(제26조)

- (1)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공공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용자대행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자율사업의 절차 준용)를 거쳐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한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요구를 함(제26조제1항)
- (2)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공공사업의 예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율사업의 절차를 준용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확정하고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 31.까지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예산요구를 함(제26조제2항)
- (3)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예산에 반영함(국고는 예산청에 요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제26조제3항)

<검토할 사항 : 제2장-마-(2) 참조>

다. 정부예산안의 통지,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등 절차는 자율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함(제28조)

- 사업신청 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7조, 제8조)
- 신청서식(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신청서 심사 및 예산요구 절차(제11조 내지 제18조)
- 정부예산안 통지 및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19조 내지 제21조)
-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및 공지(제22조, 제23조)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29조)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 경제성
 - 농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 여부
 - 기대효과 등
- (2)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29조제3항)
-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29조제4항)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0조)

- (1)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지침안을 붙여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선정을 요구함(제30조제1항)
 - 청의 소관사항은 자체 정책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요구
-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0조제2항)

다. 신규사업의 선정(제31조)

- (1)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2, 4, 7, 9월의 마지막 주중(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1월내에서 연기가능)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4조의4제2항)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함(제31조제1항)
 - 위원회 개최일전 5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함
-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음(제31조제3항)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어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31조제4항)

[설명] 이때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라.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32조) :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후 당해 제안자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사업신청서 제출(제9조)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11조 내지 제13조)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14조)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공개심의(제15조)

제5장 보칙

- 농림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다만 용자대행기관에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용자대행기관에 1차 관리책임이 있음(제39조제1항)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부 사업국 등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서기관, 사무관)가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한 후 의견을 기재토록함(제39조제2항)
 - 지원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제39조제3항)
- 시설등에는 농림사업안내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39조제4항 별표2)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함(제39조제5항)
-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축·임·삼협조합(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제39조제6항)
- 농림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축·임·삼협조합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40조)
 - [설명] * '94-'96 지원자 명단 및 금액을 '97. 1-2월중에 농·축협조합의 경영평가보고서 및 동 기간중에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한 영농준비 교육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바 있고
 - * 앞으로도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지원자 명단 및 금액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할 계획임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41조 별표 3)

여 백

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여 백

1. 배경

- 다양한 농림사업자금을 집행관리하는데 따른 통일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례라도 각 사업자금별로 처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 농림사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1996. 6. 13.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996. 8. 1.부터 시행
- 본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사업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집행효율성 제고

< '97. 10. 29. 주요개정사항 >

- 지원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지원실적을 공개토록하여 개인정보 누출시비 개선
- 회계연도말까지 용자한도액 배정신청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 사용하거나 불용처리토록하여 대여금의 회계연도내 대출원칙 제고
- 자금신청에 의한 용자한도액 배정 및 배정일자별 대출관리토록 명시

< '98. 7. 23. 주요개정사항 >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실적에 의한 입증서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의한 검정실시방법 구체화
- 부당사용한 대출금 회수시 위약금 징수조건을 강화하고, 정책 자금 지원제한 보장

2. 주요골자

<기본방향>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 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가. 자부담금 우선집행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자부담금 우선집행 및 사업자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동 금융기관거래자료를 사업실적의 증거서류로 인정

나.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금액 회수
 - 다만,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금리 적용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 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에게 통지
 - 금액 10억이상, 비율 50%이상 : 5년간 지원안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금액 5-10억원 미만, 비율 30-50%미만 : 3년
 - 금액 1-5억원 미만, 비율 20-30%미만 : 2년
 - 금액 1억원 미만, 비율 20%미만 : 1년
-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무거운 것을 적용

다. 사업의 검정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 또는 사업완료시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를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동 금융기관거래자료중 하나에 의하여 사업검정 실시

라.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시·도→시·군(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가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지원과에 배정요구)

마. 대출원장 관리

- 융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구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촉구

바.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 융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하여야 함

사. 대출기한내에 대출이 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기한(당해 회계연도 말 : 제10조제2항)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명시)
 - 납기내 반납시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내 금리, 그 후는 연체금리 적용

아. 대출기한이 경과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금액의 대출불가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 대여일부터 다음회계년도 1. 10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다음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금리 적용

자. 여신관리계좌 입금액중 미지금액 등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 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계획상의 매월 소요금액을 당해월의 말일까지 지급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
- 여신관리계좌마감일(예산계상연도의 다음연도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 반납
- ※ 반납명령을 받은 날 또는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각각 11일째되는 날 이후 반납시는 그 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 연체금리 적용

3. '99.주요 변경사항

사 항	'96.7. 31. 이전	'96. 8. 1. ~ '97. 12. 31.	'98. 1. 1. ~ '98. 8. 2.	'98. 8. 3. 이후
①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 자금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시군등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제4조제2항) ('97.예산부터 적용) - 자부담금 비율이 사업비의 20% 이상이고 금액이 2억원 이상일 때는 착수 시와 진척 50%시에 자부담금을 각각 반액씩 집행 - 기타의 경우는 착수 시에 자부담금 전액 집행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금집행 증거자료를 거래당사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의 자필서명예 의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장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제4조제3항 및 제5항) ○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와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인정(제4조제6항)
②완료사업의 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 된 때 사업집행실적 검정 및 보조금 정산(제13조제4항)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집행증거자료에 따라 검정 실시(제4조제7항)
③부당사용 에 대한 제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사용 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 사용 금액의 비율에 따라 4개의 제재 기준으로 구분함(제16조) - 10억원 이상 50% 이상 : 5년간 지원 안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5-10억원 미만 30-50%미만 : 3년 - 1-5억원 미만 20-30%미만 : 2년 - 1억원 미만 20% 미만 : 1년 * 2년 이상의 경우 기여도 또는 정황에 따라 개별규정에서 50% 단축 가능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무거운 것을 적용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지방비 및 자부담금 포함)으로 지원 제한기간 적용(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이미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기산(제16조제2항)

사 항	'87. 3. 1 이전	'96. 8. 1. ~ '97. 12. 31.	'98. 1. 1. ~ '98. 8. 2.	'98. 8. 3. 이후
④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지원대상자의 신청 없이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 지원대상자의 신청 없이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 월마다 『시도→시군등(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등(지원대상자가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신청)→ 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지원에 직접배정요구)(제7조의2, 제13조제5항)	(좌와 같음)
⑤대여시기	○ 용자한도액 배정 즉시 대여	○ 배정된 용자한도액을 사업지원과가 『시도→시군→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	○ 용자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지원과가 시도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재배분(제3조의3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제8조제1항)	(좌와 같음)
⑥대출원장 관리	-	○ 용자한도액 잔액 기준으로 관리(관행) -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 해당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대출 지연의 요인	○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10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좌와 같음)
⑦용자금 예산의 이월사용	-	○ 예산 이월 조치 없이 용자금 예산을 다음 회계년도내에 사용 가능 - 용자한도액 배정이 안된 금액을 다음 회계년도 말까지 대여가능 - 배정된 용자한도액을 다음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 가능	○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제5조제1항) ○ 당해 회계년도 내에 용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대여된 금액은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하여야 함(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좌와 같음)

사 항	'97. 3. 1 이전	'96. 8. 1. ~ '97. 12. 31.	'98. 1. 1. ~ '98. 8. 2.	'98. 8. 3. 이후
⑧대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년도말을 용자종결기한으로 함 ○ 분기단위로 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계상 년도의 다음 연도 말(용자종결기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회계년도 말(제10조제2항) 	(좌와 같음)
⑨대출기한 도래전에 대출 불가능한 용자 한도액의 반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 말 현재 대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 반납 - 반납시 일률적으로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이 매 분기 말 현재 대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 중앙회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 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 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항) - 납기 내 반납 시 :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 - 납기 후 반납 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 내 금리, 그 후는 연체 금리 적용 	(좌와 같음)
⑩대출기한 이 경과한 용자 한도액의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납대상금액 규정 없음 - 대여일부터 반납일까지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계상 년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 반납 - 대여일부터 반납일까지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1항 별지 제5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제4항 별지 제6호서식)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2항)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제10조제3항 제1호)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3항제2호) 	(좌와 같음)
⑪여신관리 계좌 입금액중 미지급액 등의 반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취급기관은 입금일 부터 3월이내에 지급 신청이 없는 금액을 사업주관기관의 지급 불가능 판단을 받아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 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 계획상의 매월 소요 금액을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제12조제3항) 	(좌와 같음)

사 항	'96.7. 31. 이전	'96. 8. 1. ~ '97. 12. 31.	'98. 1. 1. ~ '98. 8. 2.	'98. 8. 3.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계상 연도의 다음 연도 말울 경과한 미지급액 반납('97. 예산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관리계좌마감일(예산 계상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 반납(제12조제4항) ※ 반납 명령을 받은 날 또는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각각 11일째되는 날 이후 반납시는 그 날부터 반납일의전일까지 연체금리 적용(제12조제5항 및 제7항) 	
⑫부당사유 대출금의 회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납통지서 접수일 부터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리 적용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일(고의성이 있는 경우 부당사용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회수.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부터 적용(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⑬지원실적의 공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 시와 보조금 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차후에 지원 실적을 시·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농업인 교육 자료, 반상회보 등에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음(제18조제3항) - 공개 근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에 명시됨 	(좌와 같음)

4. 해설

< 일 러 두 기 >

-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가. 정의(제2조)

- (1)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1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산림개발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 (2) **지원대상자** : 농업인등,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2호)

○ **농업인등** : 농업인·임업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 : 농·축·임·삼협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림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중 농림업을 말함

○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촌”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농촌을 말함

(3) **지원** :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3호)

(4)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4호)

(5)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외의 기관(제2조제5호)

[예] 농특회계(융자 : 농협중앙회 농특사무국), 농지관리기금(농어촌진흥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축협중앙회 기금관리부)

[설명] 농림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자금과”에 해당됨

(6) **사업자금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6호)

[예] 농특회계(융자업무 : 농업금융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총무과), 농안기금(유통관리과), 농지관리기금(농지관리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업경영자금(농업금융과), 축산경영자금(축산정책과)

(7) **사업지원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7호)

(8)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융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8호)

- 행정기관 : 농림부, 청, 농림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등, 농촌지도소 등

[설명] 읍면등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등 : 농·축·임·삼협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명]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융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9)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9호)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1)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제3조제1항)

[설명] 이 훈령에 위배되는 개별규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혼동을 막기 위하여 개별규정중 이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이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2)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제3조제2항)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4조제2항)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융자보조 등 비율을 일치시켜 집행(제4조제3항)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7조의2)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8조제6항 내지 제9항)
-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안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10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16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축협 자체자금으로 구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다. 집행의 원칙(제4조)

-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4조제1항)
-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을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집행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3항)

- (4) 융자한도액중 매 분기말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년도내에 대출안된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4조제4항)
-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제4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 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설명]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을 확인할 수 있음(제4조제6항)

[설명]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서명한 영수증 등으로 가능하도록 인정하였음. 그러나 자기사업에 투입된 자신과 가족의 노동 대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입증하기 어렵고 자기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고, 자가노동력으로 상계 처리할 경우 자기자본의 투입 없이 정부지원자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되는 모순이 있어 자가 노동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본규정 개정시행('98. 8. 2)이전에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 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함(제4조제7항)

[설명]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 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라. 이월(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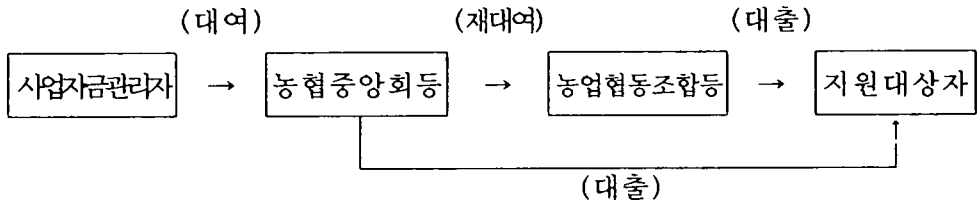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이월할 수 없으며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마. 융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8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융자조건 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제6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융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6조제3항)

(2) 용자의 방법(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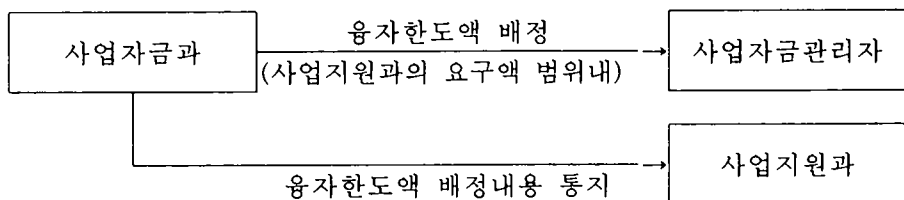
(3) 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7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한도액 배정 요구(제7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7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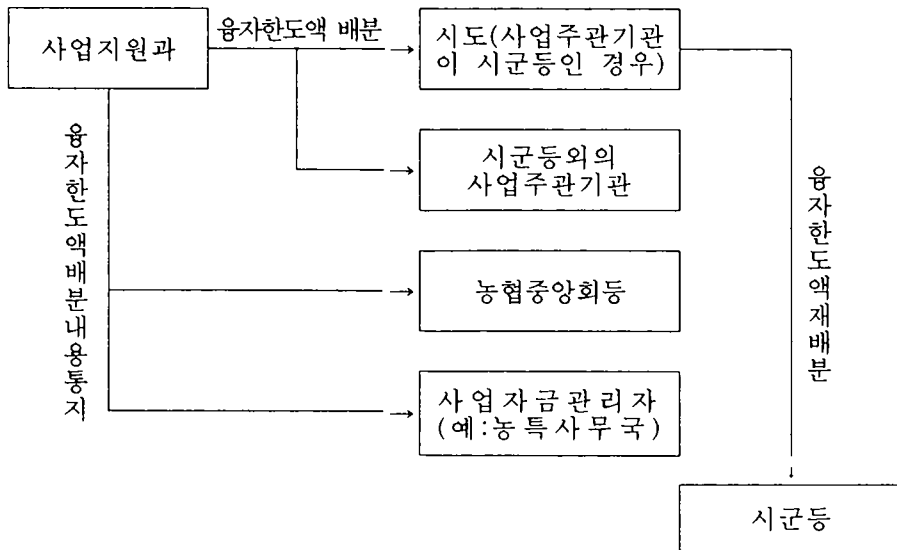
(4) 용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7조의3)

- 용자한도액 배정절차(제7조의3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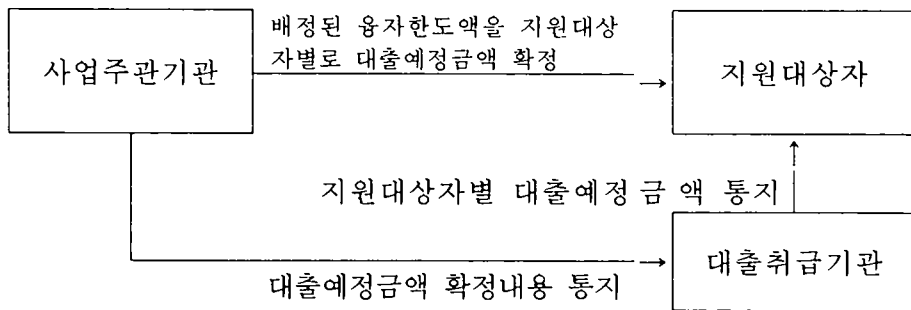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7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8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융자한도액을 다음의 기관에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신청이 있어야 대여를 실행할 수 있음(제8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요구를 한 경우도 사업자금관리자는 지체없이 대여를 실행함(제8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을 실행함**(제8조제3항)
 - 농협중앙회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토지매입비,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설비 또는장비 등의 제작·설치·구입비를 포함)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실행 가능(제8조제4항)

[설명] 따라서 1천만원이하로서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금액이하의 시설비는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업실적 확인이 없어도 대출실행이 가능함

- 농협중앙회등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여신관리계좌에 준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름

[설명] 농특회계사무국이 농협중앙회 명의의 예금구좌를 개설하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월별 공정계획을 받아 동 계좌에 입금한후 공정계획에 따라 입금액을 지급 한다면 여신관리계좌에 준하는 사항임

- 대출취급기관이 융자한도액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8조제5항)

바.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8조제6항 내지 제9항)

- (1)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한 대출을 촉구한 내용과 **매분기말** 현재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8조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8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금액
- (2) 농협중앙회등은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통지가 있기 전이라도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8조제7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9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그후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금액

사.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8조제10항)

[설명] 종전에는 융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아.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제10조)

- (1)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10조제4항 별지 제6호서식)
- (2)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제10조제2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10조제3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 10.(1. 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에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명] '96. 7. 31.까지는 『융자종결기한』제도를 두어 융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 『융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實效性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융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함. 따라서 당해 회계년도에 대출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융자한도액 배정을 하지 말고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조치하는 것이 안정적임

* 특히 '98년부터는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장등이 매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여 부도·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당해금액이 반납되는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

-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11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차. 여신관리계좌의 운용(제12조)

(1) 여신관리계좌 입금 시기(제12조제1항)

- 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 설계완료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는 건축허가 포함), 공사, 구매, 기타 사업 시행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등 **사업착수가 실제로 가능한 시점**
- 입금시는 반드시 **월별 공정계획(공정에 따른 소요금액 포함)**을 제출받아야 함
 - 지원대상자가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시행기간이 6월이하이고 대출금액이 2억원이하인 경우는 월별 공정계획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여신관리계좌 입금액의 관리(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월별 공정계획을 참작하고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지급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월별 소요금액을 당해월의 말일까지 지급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설명] 월별 공정계획을 생략한 경우에도 매월 지급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신속한 지급을 유도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진척을 확인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지원과에도 통지하여야 함(제12조제3항)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였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는 미지급액을 농협중앙회등을 거쳐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반납명령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1일이후 반납시는 그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제12조제7항)

- 단순히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는 그동안의 여건변동 사항을 고려한 새로운 공정계획을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그에 따라 미지급액을 지급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년도말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제12조제4항)

[설명] 재이월 불가원칙과 균형유지

- (3) 여신관리계좌마감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반납(제12조제5항 및 제6항)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리계좌마감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해야함(제12조제5항)

-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1일이후 반납시는 그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반납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지체없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함(제12조제6항)

-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1일이후 반납시는 그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

카. 보조금의 집행(제13조)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13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13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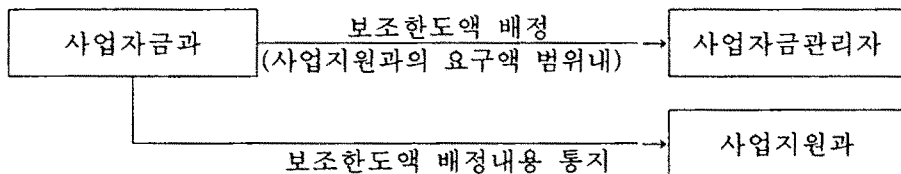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13조제3항)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13조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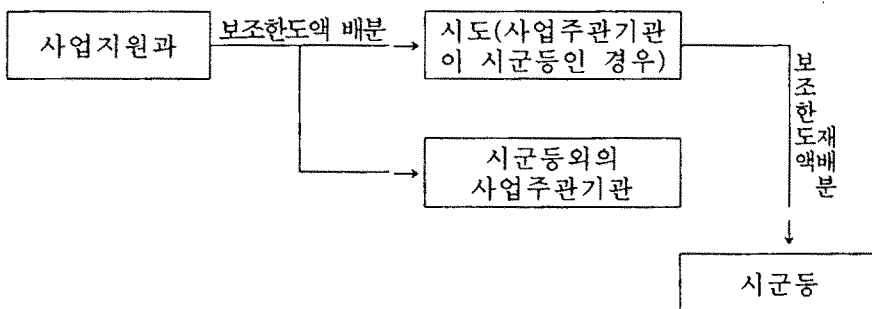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13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제7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7조의3제1항)



[설명] 국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타.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1)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 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 제1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 관련분야 사용목적 지원시는 지원목적외 용도. 이하 같음.)에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한 때
-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지원후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사유를 따로정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않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제14조제2항)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출일부터 적용
-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적용
-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적용

(주)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부당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

(2) 부당사용한 대여금 및 보조금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 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에 지체없이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1항)
 -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부당사용사유를 통지받은 날**
 - 반납시는 통지서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제5조제2항)
 - 기타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회수한 날**(대출금이 회수되기 전에 약정상의 대여금 회수일이 도래하는 경우는 약정상의 대여금 회수일)
 - 반납시는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함(제15조제2항)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15조제3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16조)

-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기간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 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제한사항을 통지받은때에도 같음(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 유	지원제한기간
① 부당사용 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② 부당사용 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③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④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16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16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16조제3항)
-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16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제16조제1항)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않는 기간의 기산일(제16조제5항)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16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조제7항)

과. 보칙(제18조)

- (1) 지방자치단체, 농·축·임·삼협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 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8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사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는 지원대상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18조제3항)

Ⅲ. 농림사업 실시규정

(훈령 제965호)



여 백

농림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96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의 선정과 실시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시행 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 등이 창의와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농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0. 28.>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신설 1997. 10. 29.>

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농림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신설 1997. 10. 29.>

다. 농림업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라 한다.) <신설 1997. 10. 29.>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의 계획과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농림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이를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한다.

1.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개정 1997. 10. 29.>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조의2 (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안에는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 요령과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20일까지 농림부의 사업부서, 청, 시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안중 제4조의3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확정하기 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제4조의3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3. 9>

③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 차관보 및 각 국장(공보관, 감사관, 농업정보통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1998. 3. 29>

2. 청의 기획관리관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회장 각 1인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6. 10. 28.>

제4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2.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3.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4.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림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안건과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을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3. 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을
위한 경우는 2월, 4월, 7월, 9월의 마지막 주중 각 1회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
집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5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6. 10. 28.>

제4조의6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실무위원을 두되, 실무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농림부의 국장 및 청의 기획관리관인 위원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의 과의 장과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8. 3. 9>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 제4조의4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5조 < 삭제 1996. 10. 28.>

제6조 < 삭제 1996. 10. 28.>

제2장 자율사업 <개정 1996. 10. 28.>

제7조 (자금지원계획 및 자율사업 신청요령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요령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읍면동을 통하여 반(班)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8조 (자율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명칭을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농업협동조합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 농지개발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기관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 및 상담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의 규모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자격, 자율사업의 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2.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사항(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기술수준, 노동력, 토지 및 생산시설과 영농후계자의 자격요건
4. 담보(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를 포함한다.) 및 자부담 능력
5.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
6. 선도농가의 사례 또는 외국의 예
7. 생산자단체등의 구성방법 및 절차
8.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인허가의 요건 및 절차
9. 자율사업이 잘못될 경우 예상되는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9조 (자율사업의 신청 등) ① 자율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촌지도소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지도소장 및 읍·면동장과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 등의 총괄부서가 자율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한다.)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0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자율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1997. 10. 29.>

제11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심사전 절차)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촌지도소
2. 임업과 관련된 것은 임업협동조합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신설 1997. 10. 29.>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별로 금액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전문개정 1996. 10. 28.]

제12조 (농촌지도소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지도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3조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28.>

제14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작성 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심사하되, 지원신청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심사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자율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을 확인하여, 성실하게 기록한 신청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성실하게 기록하지 아니한 자보다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 12.>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를 작성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전업농,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신청자에게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이수하지 아니한 자보다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1998. 11.12.>

⑤ 시·군 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8. 11.12.>

⑥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15조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공개심의 등) 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 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의결로 정하는 자율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12.>

②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구성원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5인이내로 시장군수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 인 경우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이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구의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12.>

1. 도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도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과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1998. 11.12.>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어야 한다. <개정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1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1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 계획안을 수립하고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 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개정 1997. 10. 29.>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개정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2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로부터 제9조제4항에 정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스스로 평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12.>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최저 금액미만으로서 1천 5백만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장 공공사업 <개정 1996. 10. 28.>

제25조 (공공사업의 신청) ① 공공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등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이하 “융자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10조에 정한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행기관이 공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사업효과의 확산방안·사업준비상태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융자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동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신청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26조 (공공사업신청서의 심사 및 예산 반영)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의 총괄부서가 시군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③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총괄부서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에 반영(국고의 경우 예산청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8. 3. 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7조 <삭제 1997. 10. 29.>

제28조 (준용규정) 제7조, 제8조(제2항제7호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공공사업에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중 “영농후계자의 자격요건”은 “경영능력”으로 하며, 제8조제2항제6호중 “선도농가”는 “우수사업자”로 하고, 제11조중 “제9조제1항 및 제3항”은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준용규정중 “자율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농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은 “제3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자”로 한다.

<개정 1996. 10. 28, 1997. 10. 29.>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개정 1996. 10. 28.>

제29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농림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3. 경제성
4. 농업인등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대효과
7.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0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2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분석자료에 사업시행지침안을 붙여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의 소관사항은 자체 정책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요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1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개최일전 5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그 사업시행지침을 포함한다.)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확정한다. <개정 1997. 10. 29.>

②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한다.

<개정 1997. 10. 29.>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어촌발전계획수정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2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된 날부터 2월이내에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5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제33조 < 삭제 1996. 10. 28. >

제34조 < 삭제 1996. 10. 28. >

제5장 보 칙 <개정 1996. 10. 28.>

제35조 < 삭제 1996. 10. 28. >

제36조 < 삭제 1996. 10. 28. >

제37조 < 삭제 1996. 10. 28. >

제38조 < 삭제 1996. 10. 28. >

제39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읍자대행기관에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읍자대행기관에 1차 관리책임이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분기별 1회이상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1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은 지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2의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⑤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⑥ 농림사업의 계획·집행·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과 농·축·임·삼협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 1998. 11.12.>

제40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29.>

제41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8. 11.12.>

부 칙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28.>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12.>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림사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합 계(87)		(19)	(68)
1.농업(식량작물) 구조개선(20)	가. 생산기반확충(14)	(5)	(15)
		(2)	(12)
		영농규모적정화사업 토양개량사업	주요농작물원원증및원증 생산* 밭기반정비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대·중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농촌생산기반조사및생산 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지역특화사업지원 서남해안간척
	나. 농업기계화(3)	(2)	(1)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농업기자재생산시설및생산 비축자금지원

*표는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임.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다. 생산및유통개선(3)	(1)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	(2) 농업협동조합합병지원 농산물생산자를위한직접 지불제
2.농업(원예특용 작물)구조개선 (16)	가. 생산기반확충(1)	(3)	(13)
	나. 생산및유통개선(15)	(3)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 농산물규격출하 생산자조직육성	(12)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산지유통기반확충 농수산물도매시장및공판장 건설 농산물물류표준화 농축산물판매촉진 농수산물물류센터(시설)건설 농산물직거래지원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농수산물도매시장및물류 센타출하촉진자금 채소수급안정사업 농산물해외시장개척 농산물무역진흥센터건립 수출농산물저장시설설치 우수농산물수매및유통지원
3. 축산업구조 개선(16)	가. 사육기반확충(4)	(1)	(15)
	나. 생산및유통개선(10)	(1)	(4)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축산단지조성 가축계열화사업 소산업정보화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9) 축산물종합처리장및공판장 건설 축산물품질향상및유통시설 지원 경영상담·홍보및기술개발 축협조합 경영개선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 사료제조시설및사료원료구입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다. 가축개량(3)		가축방역및축산물위생 학교우유급식 축산자조금 (2) 가축개량사업 가축개량기반구축
4.농촌개발(17)	가. 생산및유통개선(2)	(5) (1)	(12) (1)
	나.기술개발및정보화(3)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및 환경농업지구조성	농촌가공산업육성 (3) 농림기술개발 농촌활력화시범사업* 기술보급사업*
	다. 인력육성(6)	(3)	(3)
		농업인후계자육성 전업농육성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시범 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업계학교등교육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라. 소득원개발(4)	(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3) 농공단지육성 한계농지정비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마. 생활환경개선(2)	(2) 농촌정주생활권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2) 농촌정주생활권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5. 임업및산촌구조 개선(18)	가. 경영기반확충(5)	(5) (1) 산림경영장비지원	(13) (4) 사유림협업경영 임도시설 영림계획 임업기술개발보급
	나. 생산및유통개선(5)	(2) 임산소득증대 임산물이용가공및저장시설	(3) 임업협동조합및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임산물유통개선지원 합판및보드류시설지원
	다. 인력육성(2)	(1)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	(1) 임업전문인력양성및임도시 공장비지원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라. 환경임업육성(4)		(4) 산림휴양공간조성 사방사업 산림생태보전 산촌종합개발
	마. 산림자원조성(2)	(1) 해외조림사업	(1) 산림조성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199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사업(시설)은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시설규모 :
4. 재원 :
5. 사업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cm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 「이 사업은 19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3 : 제4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요건

- 가.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인 법인
- 나.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영농조합 법인에 한함)
- 다.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 라.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마.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바.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에 한함)
- 사.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당해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예 :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등)

- 아.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2. 사업별 요건(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 가. 농업법인경영체를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서 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농업인이 아닌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읍·면 또는 농촌지도소에 위임할 수 없음
-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는지를 확인 후 정산할 것
- 라.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마.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 사.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경매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잉여기간이 없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자. 사업규모가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징구
- 차.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미, 양, 가에 해당되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 단,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는 농촌지도소에서, 신용평가는 시·군 농협(농업분야), 축협(축산분야)에서 실시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의2제1항 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작성요령

- 별도의 지침지시없이도 농업인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에 제한없이 상세히 열거
- 일련번호는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단위사업의 순서를 대분류별, 중분류별로 자율사업 및 공공사업의 순서로 적음 (예)

1	○○○○○○사업 (자율)
---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서식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항목을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각 항목의 기재는 반개조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당해 항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는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기재하여야 함

일련 번호	단 위 사 업 명 ()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00 과입니다.
(○○과장 ○○○, 사무관 ○○○)

1. 목적

2. 시책 및 추진방향

- * "6-바"에서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시책방향의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재

3. 근거법령(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의 관련조항을 법령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4. 연도별 지원계획(42조원 구조개선 및 15조원 농특세사업 위주로 작성하되, 굵은선 안에는 사업예정년도의 예산안 금액을 기재)

구 분		'92- 년	년	년	년 (예산안)	년	-2004
사업량							
사 업 비 율	계	백만원					
	보 조 유 자 지 방 비 자부담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년도 사업시행요령(○○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지원시설의 종류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반개조식으로 기재

나. ○○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재원명 기재)					
			계	보 조	용 자			
계		백만원						

* 용자조건 : 연리 %, 년거치후 년상환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 신규사업의 경우 이 지침 시행후 새로이 신청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6의 가 내지 바”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그외의 경우는 < >항목자체를 삭제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명을 기재)

나. 사업담당부서(과단위까지 기재하고 농림부 및 청의 경우는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병행기재)

○ 농림부(또는 ○○청) :

○ 시도 :

○ 시군자치구 :

다. 자금지원예정자(자율사업의 예와 같이 자금지원예정자가 다수인이어서 기재할 수 없거나 확정전에 발표하여 혼란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사업비 집행방법,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기재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 등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에 관한 서식, 사업비에 포함하는 비목의 범위, 검정 및 정산 사무처리절차, 기타 세부 필요사항을 상세하게 기재(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3항 내지 제8항 참조)

바. 기타사항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정상운영되어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체계 기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주)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를 참작하여 정함 (별지제7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나. 보고·기타

* 보고서식은 사무관리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수시보고의 심사를 받은 것에 한하며, 서식 위좌측 여백에 지정 또는 심사를 받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6. ○○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년도는 사업예정
년도의 다음년도를 말함)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사업신청서
를 제출할 기관명]

나. 신청자격

- * 농업인들의 선호가 높아 신청경쟁이 치열하여 탈락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자격요건 강화조건을 반드시 기재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법인경영체의 경우는 작성요령에 기재된 공통기준과 사업별 특성에 맞는 최소기준을 명시)

- 우선순위

- * 농림부장관(전업농,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이 따로 정하는 전문경영체에 대하여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반면,
- * 전문 경영체외의 생산자단체 등에게는 농업인등 보다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함

- 선정절차

- * 대형사업 및 첨단시설 설치사업등은 전문적이고 객관성있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표준경영진단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사업성 검토내용 기재

바. 기타사항

-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의2제3항 관련]

19〇〇년도
농 립 사 업 시 행 지 침 서

[각권별 제목]

총6권중 제〇권

19〇〇. 〇〇. 〇〇.

농 립 부

< 작성요령 >

○ 구성 : 총6권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편성

- 각권의 첫장에 일러두기를 기재(권별 수록내용, 문의기관 등)
- 각권내용의 차례(目次)를 전체권 공통순서로 하여 특정권만으로도 다른권에 수록된 내용목록을 알 수 있도록 함
- 각권의 쪽번호는 제1권부터 시작하여 제6권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함

[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제1항 관련]

자 율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 -)	
	주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중퇴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업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 (량)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div>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275-004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 별 시 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m'	m'	대			
		점적관수 :							
		스프링클러 :				(톤)			
	공 동 시 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m'	개 소 (톤)	식	대 (톤)	m'			
<p>(주) : 1. 선과기의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p>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 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 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 자단 체등, 회사, 기타	공 동 시 설								
	○○○○								
	○○○○								
	기 타 시 설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로 표시

< 작성요령 >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9조제4항 관련]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 상 평 가 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19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275-00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경력 ○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 영농규모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19 년 월 일
○ ○ ○ ○ 장 (인)

275-007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3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19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275-008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제2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19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젓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m'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19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19 . 1. 1. - 12. 31.)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275-0093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증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괄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4년	3년-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물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적용대상자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4년	3년-5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8년	6년-10년
농업중 과수	16년	12년-20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8호서식 : 제2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 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275-010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훈령 제948호)



여 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1996. 6. 13.]
[훈령 제862호 제정]

개정 1996. 8. 8. 훈령 제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 948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 8.>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중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 8. 8, 1997. 10. 29.>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1998. 3. 9.>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 10. 19.>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6. 8. 8.>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개정 1996. 8. 8, 1997.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및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6항 내지 제9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29.>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96. 8. 8, 1997. 10. 29.>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 10. 29, 1998. 7. 23.>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 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98. 7. 23.>

④ 제8조제8항 및 제9항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 10. 29.>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신설 1998. 7. 23.>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 7. 23.>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 (용자 조건의 결정) ① 용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용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7조 (용자의 방법) ① 용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 10. 29.>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 10. 29.>

제7조의2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 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2항”은 “제1항”으로 한다. <신설 1997. 10. 29.>

제7조의3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여야 한다.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 10. 29.>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 7. 23.>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토지 매입비와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설비 또는 장비 등의 제작·설치·구입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을 확인 받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는 방법(농협중앙회등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여신관리계좌에 준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⑤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농협중앙회 등은 매 분기 말 현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이라도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지체없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9, 1998. 7. 23.>

⑧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농협중앙회등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은 “제8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월 10일(1월 1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은 “반납 기한(반납 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월 11일”은 “반납 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

⑨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농협중앙회등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은 “제8조제7항”으로 하고, 제1호중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월 10일(1월 1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은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 후 10일이 되는 날(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한 날의 전일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월 11일”은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부터 기산하여 11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⑩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용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제9조 <삭제 1997. 10. 29.>

제10조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대출취급기관은 용자한도액중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월 10일(1월 1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월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④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 10. 29.]

제11조 (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0. 29.>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12조 (여신관리계좌의 운용) ① 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 설계 완료(건축 공사가 있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공사, 구매, 기타 사업 시행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등

사업 착수가 실제로 가능한 시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월별 공정 계획(공정에 따른 지원 비율별 소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농업인등인 경우로서 사업 시행 기간이 6월 이하이고 입금할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공정 계획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1996. 8. 8, 개정 1997. 10. 29.>

②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월별 공정 계획을 참작하고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 실적을 확인받아 지급하되, 월별 소요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월의 말일까지 지급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③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 진척을 확인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1.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지급액을 농협중앙회등을 거쳐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개정 1997. 10. 29, 1998. 3. 9.>

2. 단순히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는 그 동안의 여건 변동 사항을 고려한 새로운 공정 계획을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그에 따라 미지급액을 지급<개정 1997. 10. 29.>

④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이하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이라 한다.)을 경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1997. 10. 29.>

⑤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리계좌마감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에 반납하되,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1일이 되는 날 이후에 반납할 경우는 그 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 10. 29.>

⑥ 제5항의 규정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농협중앙회등이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반납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5항중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등”으로, “농협중앙회등에”는 “사업자금관리자에게”로 한다. <신설 1997. 10. 29.>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액을 반납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5항중 “여신관리계좌 마감일”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 한다.<신설 1997. 10. 29.>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1997. 10. 29, 1998. 7. 23.>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 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 10. 29.>

제14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개정 1996. 8. 8, 1997. 10. 29.>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1997. 10. 29, 1998. 3. 9.>

5.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개정 1998. 7. 23.>

②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 7. 23.>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 7. 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취관의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신설 1998. 7. 23.>

③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지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제15조 (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에 지체없이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본문중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등”으로, “대출금”은 “대여금”으로, “회수”는 “반납”으로, “징수”는 “납부”로 한다.<개정 1998. 7. 23.>

③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④ 제14조제1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 규정(제1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1997. 12. 30, '98. 7. 23.>

제16조 (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8. 7. 23.>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때 : 3년<개정 1998. 7. 23.>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때 : 2년<개정 1998. 7. 23.>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때 : 1년<개정 1998. 7. 23.>

② 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 7. 23.>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 7. 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개정 1998. 7. 23.>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신설 1998. 7. 23.>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제17조 <삭제 1997. 10. 29.>

제18조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신설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 10. 29.>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 10. 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 8. 8.>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 1. 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 8.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 8. 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융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농특회계금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 12. 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 3.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7. 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축·임·삼)협중앙회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 확인 일 19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군·자치구○○과	○○○○	○○○
.	○○조합 ○○부서	.	.
.
.
.

사업명	주 소	성 명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 금과 융자 한도 배정일	사업자 금과 융자 한도 배분일	사 도 의 융 자 한 도 액 재 배 일	대출예 정금액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 사 업		김삿갓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 사 업		김개동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축·임·삼협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소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번지	통	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p>1900. 00. 00.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 한 바 있는 0000 사업의 융자한도액 00,000,000천원중 00,000,000천원 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직인)</p>						

여 백

V. 참 고 사 항



여 백

1. 42조원 지원계획('92-'98)

가. 총괄

(단위 : 억원)

합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417,021 (100%)	353,977 (84.9)	37,916 (9.1)	25,128 (6.0)

나. 정부지원

< 분야별 >

(단위 : 억원)

분 야	투자계획	투 자 실 적		
		계	'92-'97	'98
계	353,977	342,501	275,887	66,614
경쟁력강화	317,218	307,598	248,217	59,381
농어촌활력화	36,759	34,903	27,670	7,233

< 재원별 >

(단위 : 억원)

분 야	투자계획	투 자 실 적		
		계	'92-'97	'98
계	353,977	342,501	275,887	66,614
국 고	321,232	309,667	248,217	61,450
축발기금	32,745	32,834	27,670	5,164

* 투자실적은 예산확보기준임

* 국고에는 농지관리기금, 임업진흥기금 등 공공기금이 포함됨

다. 연차별 정부지원 실적(42조원 지원계획 기준)

(단위 : 억원)

사업분야	'92-'96 (A)	'97 (B)	소계('92-'97) (C=A+B+C)	'98계획 (C)
○ 생산기반정비	50,853	21,397	94,151	21,091
○ 농업기계화	19,107	4,518	27,285	3,660
○ 시설현대화	9,947	3,125	16,374	3,302
○ 영농규모화	16,241	3,808	23,889	3,840
○ 기술 개발	7,373	2,047	11,419	1,999
○ 정예인력육성	14,619	4,463	23,765	4,683
○ 축산업구조개선	29,291	6,923	43,090	6,876
○ 농수산물유통개선	12,458	4,543	21,271	4,270
○ 어업구조개선	14,117	4,713	23,573	4,743
○ 임업구조개선	14,354	4,320	22,781	4,107
○ 농외소득원개발	15,226	5,554	26,745	5,965
○ 생활환경개선	5,288	1,602	8,158	1,268
계	208,874	67,013	342,501	66,614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가. 지원방향

- 경쟁력 강화에 중점 지원하되, 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에도 균형있게 배분
- 국민 성금적 성격을 감안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함
- 농어촌특별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농어촌특별세사업중 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는 기존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조화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전입금계정에 전입후 집행

나. 분야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대분류	중분류	지원액	대 상 사 업
합	계	150,000 (100%)	
농 어 업 경쟁력강화	계	90,775 (60.5)	
	- 경쟁력강화사업	52,540	경지재정리, 기술개발, 기술전문대학지원, 중소농지원
	- 농어업인숙원사업	23,685	어항건설, 신용보증기금, 어촌종합개발, 임도건설
	- 유통개혁사업	14,550	유통시설지원(물류센터, 포장센터 등)
농어촌생활 환경 개선	- 기초생활환경개선	41,040 (27.4)	농어촌생활용수, 도로확충, 하수도, 주택개량 등
농 어 업 인 복 지 증 진	- 농어업인복지증진 사업	18,185 (12.1)	농어업인연금의료서비스개선, 농어업인직업훈련 등

다. 농어촌특별세사업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총소요		'94~'97		'98		계		'99 예산안	
		%		%		%		%		%
합 계	150,000	100	49,812	100	12,662	100	62,474	100	11,303	100
I. 농어업경쟁력강화	90,775	60.5	29,535	59.3	7,595	60.0	37,130	59.4	6,780	60.0
①경지재정리	43,000		10,634		3,649		14,283		2,498	
②유통개선(물류센터*, 채소유통활성화*)	14,550		5,313		511		5,824		942	
③중소농지원*	2,000		636		160		796		140	
④농신보기금출연	7,000		2,400		590		2,990		760	
⑤농림수산물기술개발	4,650		1,823		435		2,258		376	
⑥기술전문대학육성	2,890		1,057		227		1,284		145	
⑦어항건설	7,800		3,977		1,037		5,014		847	
⑧양식어장*, 어촌종합개발	5,735		1,789		468		2,257		237	
⑨임도건설	3,150		1,906		518		2,424		289	
II. 농어촌생활여건개선	41,040 (100)	27.4	13,775	27.6	3,336	26.3	17,111	27.4	2,997	26.5
①농어촌도로정비	12,000		4,050		840		4,890		758	
②농어촌하수도정비	7,000		2,250		560		2,810		507	
③농어촌주택개량*	8,000		2,800		680		3,480		408	
④농어촌폐기물처리	2,040		675		150		825		150	
⑤농어촌생활용수개발	12,000		4,000		1,106		5,106		1,174	
III. 농어업인복지증진	18,185	12.1	6,502	13.1	1,731	13.7	8,233	13.2	1,526	13.5
①농어업인연금제	8,000		1,791		616		2,407		579	
②농어촌의료서비스*	4,785		2,568		572		3,140		499	
③학자금융자 학과 개편*	2,100		1,150		298		1,448		205	
④유학생기숙사건립	360		160		60		220		40	
⑤공공도서관건립	940		290		63		353		60	
⑥오지맞닥도교통지원	800		270		53		323		58	
⑦농어업인직업훈련	1,200		273		69		342		55	

*는 융자금 포함 사업, '97, '98년은 채무상환 예산('98 : 278억원, '99 : 513억원)제외

3.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가. 대출제도 概觀

(1) 대출절차 : (II-3-나 참조)

(2) 신용대출

○ 대출한도

- 보증부신용대출 : 2,000만원(무보증신용대출 1,000만원 포함)
- 무보증신용대출 : 1,000만원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 농기계구입자금 300만원

○ 연대보증인은 1인을 원칙으로 함

(3) 담보대출

○ 담보종류 및 담보취득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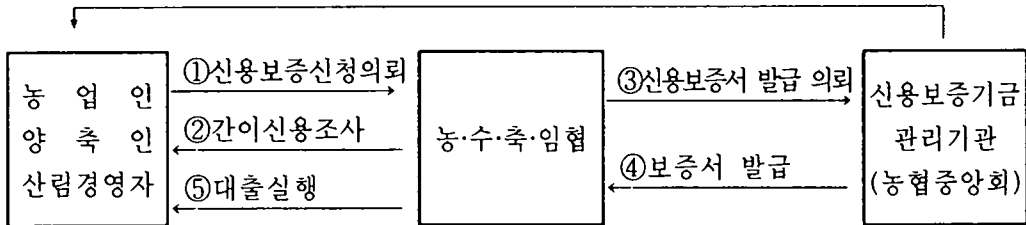
취득가능 담보물의 종류	담 보 취 득 비 율
○ 동산	○ 감정평가액의 80%이내(축협은 100%이내)
○ 부동산	○ 감정평가액의 100%이내
○ 유가증권	
- 주식	○ 대용가격의 80%이내(단, 조합은 90% 이내)
- 기타(국채, 지방채, 사채)	○ 채권액의 90%이내
○ 예·적금(예탁금)	○ 예입액의 100%이내
○ 확정채권	○ 채권액의 90%이내
○ 미확정채권	○ 채권액의 80%이내
○ 공제증권	○ 해지환급금의 90%이내(축협은 80% 이내)
○ 정부·지자체의 채무보증서	○ 보증금액의 100%이내
○ 금융기관(은행)의 지급보증서	○ 보증금액의 90%이내
○ 신용증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보증금액의 100%이내
- 신용보증기금	○ 보증금액의 100%이내
- 기술신용보증기금	○ 보증금액의 100%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보증금액의 100%이내
○ 보증보험증권	○ 액면금액의 110분의 100이내
○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증서	○ 액면금액의 80%이내
○ 선 박	○ 감정평가액의 70%이내(원양선박 40%이내)
○ 어업권	○ 감정평가액의 50% 이내
○ 기타 대출취급기관장이 인정하는 담보물	○ 취득시 따로 정함

(주) 위 담보취득비율중 동산, 부동산은 신용조사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정식 신용조사 및 심사



※ 5,000만원이하는 간이 신용조사, 5,000만원이상은 정식 신용조사 및 심사

○ 심사평점별 보증한도

평 점 별	보 증 한 도			
	자연인(농어업인)		단체 및 법인	
	정책자금	일반자금	정책자금	일반자금
50점이상 ~ 60점미만	1억5천만원	3천만원	3억원	1억원
60점이상 ~ 70점미만	2억5천만원	5천만원	6억원	2억원
70점이상 ~ 80점미만	5억원	1억원	9억원	3억원
80점이상 ~ 90점미만	7억5천만원	1억5천만원	12억원	4억원
90점 이상	10억원	2억원	15억원	5억원

(주) 농어업인등에 대하여는 3천만원 초과보증시 일정자격의 연대보증인 필요

(5) 후취담보대출 적용기준

담보등급	대 상 담 보 물 종 류	대 출 비 율
갑 류	○대지, 농지, 초지 및 임야 등 부지류 ○주택, 숙박시설, 식당시설 및 판매시설 등 건물류	○투자금액의 81 ~ 90%
을 류	○농림수축산물의 가공공장류 ○창고,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및 집하장 등 창고류 ○기계·기구 및 장치 등 기계류	○투자금액의 61 ~ 80%
병 류	○유리온실, 철골Pet 온실 등 온실류 ○선박, 어선 등 어로시설류 ○우사, 돈사 및 계사 등 축사류 ○퇴비제조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종말처리시설류	○투자금액의 41 ~ 60%

(주) 이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물은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유사한 부류의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적용한다.

나. 대출취급시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업인등		개인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교부서류	○농수축임협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대 출 신청시	○대출상담 및 신청서	○	○	○	○	○	○	개별농업경 영자금제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	×	×	○	○	
	○법인 인감증명서	×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사업계획서 사본 (사업주관기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한함)	○	○	○	○	○	○	
	○재무제표(신용조사 생략 시는 제외)	×	×	○	○	○	○	세무서 확인분
신 용 조사시	○사업현황서	×	×	○	○	○	○	세무서 확인분
	○최근 2기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	○	○	○	○	
	○합계잔액시산표 (최근 월말분)	×	×	○	○	○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 관 또는 규약	×	×	×	×	○	○	
담보물 감정시	○담보물건(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서	×	○	×	○	×	○	
	○공장의 경우 기계기구 목록	×	×	×	○	×	○	
대 출 실행시	○인감증명서	×	○	×	○	○	○	

(주) ○위 구비서류외에 대사업체, 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단, 대출취급사무소에서 순회 출장의 경우는 예외로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등 및 농업인등의 단체는 전액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및 기타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받는 경우는 면제)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받는 경우는 면제)
-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 *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에는 주택채권매입이 면제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 법무사 수수료(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4조)

- 기본수수료(건당) : 54,000원

기본보수액	30,000 원
원인증서작성료	10,000 원
등기부열람료	4,000 원
등록세납부대행	10,000 원

- 가산수수료 : 설정액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부동산 필지 2건 초과시 건당 1,000원

기계·기구 등 공동담보 목록이 있을 때 10,000원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5백만원 이하	면 제
5백만원초과 ~ 1천만원 이하	10,000 원
1천만원초과 ~ 2천만원 이하	20,000 원
2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30,000 원
3천만원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 원
5천만원초과 ~ 1 억원 이하	70,000 원
1억원초과 ~ 5 억원 이하	150,000 원
5억원초과 ~ 10 억원 이하	250,000 원
10억원 초과	350,000 원

※ 농·수·축·임협외 조합원이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5호)

-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

구	분	보 증 료 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기간 3년 미만	연 0.3%
	대출기간 3년 이상	연 0.2%

라. 기 타

사업대상자별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업자금융출취급지침 및 동요령과 농·수·축·임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